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민병덕 · 이주희
문금주 · 곽상언 · 송재봉
박민규 · 이강일 · 이해민
이인영 · 양부남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생 략)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제7조에 따른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 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「 <u>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 법</u> 」 제7조에 따른 <u>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</u>